국가장학금 2유형 자체지원기준

1. 지급 대상

1) 국가장학금 Ⅰ유형 수혜자로 직전학기 최소 이수학점(12학점) 및 성적 80점이상 충족하는 소득 구간 9구간 이하 학생에게 지급(졸업학기 제외)

※ 단, 기초·차상위계층은 70점 이상, 소득 1~3구간은 C학점 경고제 2회까지 적용

2)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백분위 점수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3) 장애학생은 백분위 점수 및 이수학점 미적용

4) 이연자일 경우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대상에 포함

2. 장학금액 최소기준

1) (하후상박) 소득구간이 낮을수록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차등 지급

2) (과소방지지급)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을 원칙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대상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금액

지원금액

-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함

3. 국가장학금 2유형 감면 기준 (2026.05.13.기준)

소득구간	지급금액
기초생활수급자	등록금전액
차상위계층	등록금전액
1구간	등록금전액
2구간	등록금전액
3구간	등록금전액

소득구간	지급금액
4구간	1,500,000원
5구간	1,500,000원
6구간	1,000,000원
7구간	800,000원
8구간	500,000원
9구간	200,000원
10구간	-

※ 공통사항

1)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

2) 장학금 지급 금액은 이중수혜대상자 등 한국장학재단 심사 후 변동될 수 있음

3) 학자금 대출 상환 대상자는 학자금 대출 상환 2유형 우대 선발기준